

면책 심의 신청 안내

감사 대상 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면책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지침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와 양식에 따라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주관 ○○○감사를 받는 직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의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는 직원 본인
- 감사대상부서 팀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아래 면책기준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감사를 받는 직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직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직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직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의 경우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

적극행정 면책심의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타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책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팀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